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592

부칙 <제34449호,2024. 4. 23.>(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대주주의 요건(제5조제3항 관련)

구 분 원회의 설치 등에 관 따라 금융감독원의 관전용 사모집합투자 표에서 "금융기관"이 라 한다)인 경우

- 요 건
- 1. 대주주가 「금융위」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 한 법률 제38조에 하려는 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검사를 받는 기관(기나. 해당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기구등 및 기금등은다. 해당 금융기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외하며, 이하 이 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상호출자제 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이거나 같은 법에 따른 기업집 단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주채무계열(이하 "주채 무계열"이라 한다)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 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최 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 본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이 경우 금융기관은 부채 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최근 5년간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_ 또는 「조세범 처벌법」을 위 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 2) 최근 5년간 채무불이행 등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 해한 사실이 없을 것
 -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실금 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법 또는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금융기관의 대주주 또 는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원의 판결에 의 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1)부터 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 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한 사실이 없을 것
- 2. 대주주가 기금등인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
- 3. 대주주가 제1호 및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 제2호 외의 내국법인 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할 것

투자기구등은 제외한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부채비율이 100분의 300 이하 다. 이하 같다)인 경 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우 다. 해당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계열회사이거 나 주채무계열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상호출 자제한기업집단등 또는 주채무계열의 부채비율이 100 분의 3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할 것 라.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4. 대주주가 내국인으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로서 개인인 경우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나. 제1호라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5. 대주주가 외국 법인가. 인가신청일 현재 외국에서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 업 또는 이에 준하는 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인 경우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이하 "외국금융회사"라 한다) 이거나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 나.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기자본이 출자하려는 금액 의 3배 이상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 할 것 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거나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 의 감독기관이 정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을 충족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것 라. 최근 3년간 금융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외국 법인이 속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법인경고 이상에 해당 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에 해당하는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6. 대주주가 외국인인가. 인가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외국금융회사의 상근임원 개인인 경우 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것 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것 다.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해당 외 국인이 본국의 금융지주회사의 대주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확인이 있을 것 라. 출자금은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입으로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마.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7. 대주주가 기관전용|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 사모집합투자기구등 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기관전용 사 인 경우 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

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나목·다목 및 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2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1호마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3호나목· 다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 4호가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마. 제5호의 외국 법인인 경우: 제1호마목, 제3호나목(금 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및 제5호다목·라목 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개인인 경우: 제1호마목 및 제6호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1.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표 제1호마목 또는 제 5호라목의 요건만 적용한다. 다만, 최대주주인 법인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 구등인 경우에는 이 표 제7호의 요건을 적용한다.
- 2.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인가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감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3. 이 표 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대주주인 외국 법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이 표 제 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 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인가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해당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해당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한정한다)가 이 표 제5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1의2] 삭제 <2016. 7. 28.>

법인인 경우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제6조의3제1항 관련)

구 분 1.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 등에 관한 법률 | 제 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 38조에 따라 금융감독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 워으로부터 검사를 받 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가 는 기관(제2호, 제3호 아닐 것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다. 승인신청하는 내용이 법 제45조의2제1항에 적합할 것 내국법인은 제외한다)라. 승인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따라 은행지주회사의 지 배주주로서 적합하고 해당 은행지주회사의 건전성과 인 경우 금융산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을 것 마. 다음의 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최근 5년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거나 법 또는 금융 관련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 취소된 금융 기관의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다만, 법 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실책임이 없다고 인정된 자 또 는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부담하는 등 금융위원 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최근 5년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의 내부자거래 또는 불공정거래 금지규정을 위반하거 나 법, 이 영,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 이 없을 것 2.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비금융주력자인 동일인에 속하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산운용을 위탁하지 아니할 것 자업에 관한 법률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에 따른 투자회사·투 자유한회사·투자합자 회사 및 투자조합인 경우 3. 한도초과보유주주가|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기금등인 경우 4.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제1호, 제2호, 제3호 는 기준을 충족할 것 및 제7호 외의 내국나.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

- 업집단(법 제2조제1항제8호가목에 따른 비금융회사로 한정한다)의 부채비율이 100분의 200 이하로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 다. 주식취득 자금이 해당 법인이 최근 1년 이내에 유상 증자 또는 보유자산의 처분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 등 차입금이 아닌 자금으로서 해당 법인의 자본총액 이내 의 자금일 것
- 라.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 5. 한도초과보유주주가|가. 주식취득 자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 아닐 것
 -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외국인인 경우
- 6.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가. 외국금융회사이거나 해당 외국금융회사의 지주회사일 것
 - 나. 자산총액·영업규모 등에 비추어 국제적 영업활동에 적 합하고 국제적 신인도가 높을 것
 - 다. 해당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금융감독기관으로부터 최 근 3년간 영업정지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다는 확인이 있을 것
 - 라. 최근 3년간 계속하여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 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이 100분의 8 이상이 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에 적합할 것
 - 마.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 |7. 한도초과보유주주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 자기구등인 경우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과 그 출자지 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유한책임사원 및 기관전용 사 모집합투자기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유한책임사원 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투자목적회사 의 주주나 사원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 행사원과 그 출자지분이 100분의 30 이상인 주주나 사 원 및 투자목적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주나 사 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각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
- 가. 제1호의 금융기관인 경우: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나. 제2호의 투자회사·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조 합인 경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다. 제3호의 기금등인 경우: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라. 제4호의 내국법인인 경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마. 제5호의 내국인으로서 개인인 경우: 제5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바. 제6호의 외국인인 경우: 제4호가목(외국금융회사는 제 외한다)·다목(외국금융회사는 제외한다)·라목 및 제6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충족할 것

비고

- 1. 자본총액을 산정할 때에는 최근 사업연도 말 이후 승인신청일까지의 자본금의 증가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 2. 기업집단에 속하는 비금융회사 전체의 부채비율을 산정할 때 해당 기업집단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 집단인 경우에는 결합재무제표에 따라 산정한 부채비율을 말한다.
- 3. 이 표 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인 외국인이 지주회사이어서 이 표 제6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주회사에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합리한 경우에는 그 지주회사가 승인신청 시에 지정하는 회사(그 지주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 또는 그 지주회사가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 해당한다)가 이 표 제6호 각 목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하는 때에는 그 지주회사가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4. 이 표 제7호를 적용할 때에는 이 표 제1호다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는 유한책임사원인 비금융주력자
 - 나.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각각의 계열회사가 보유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지분의 합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해당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 다만, 서로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사이에서는 특수관계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2의2] 삭제 <2014.2.11>

금융지주회사의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제11조제2항 관련)

- 1. 자회사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그 밖에 자회사등의 업무에 필요한 자원의 제공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 가. 자회사등의 금융상품 개발 · 판매를 위한 기획 · 조사 · 분석
 - 나. 자회사등과의 설비 · 전산시스템 등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지원
 - 다. 자회사등의 업무와 관련된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제공
 - 라. 자회사등에 대한 상표권 및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제공
 - 마. 업무용부동산의 소유 및 자회사등에 대한 임대
 - 바. 그 밖에 자회사등이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의 소유 및 자회사등에 대한 제공
- 2. 전산, 법무, 회계 등 자회사등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회사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대한 세부 내용
 - 가. 전산시설 등 전산 관련 업무
 - 나. 인사관리 및 연수
 - 다. 총무업무
 - 라. 조사분석업무
 - 마. 법률 및 세무 업무
 - 바. 회계관리업무
- 사. 홍보업무
- 아. 준법감시업무
- 자. 내부감사업무
- 차. 위험관리업무
- 카. 신용위험의 분석 · 평가
-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업무에 준하는 업무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 7. 28.>

비은행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자회사등 편입승인 기준(제16조의3 및 제16조의4 관련)

1.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 및 세부기준

인가기준 세부기준 가. 주식회사로서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 금융지주회사 및 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자회사등이 되는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회사의 사업계획 적절할 것 이 타당하고 건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 전할 것 려가 없을 것 4) 외국법인인 자회사가 손자회사를 지배하려는 경우 그 손 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나. 대주주(최대주주 대주주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 의 특수관계인인표 1에 규정된 요건에 적합할 것.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주주를 포함하며,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대주주가 법인 1) 한국정책금융공사 인 경우에는 그 2) 예금보험공사 법인의 주요 경 3) 한국자산관리공사 영사항에 대하여 4) 한국산업은행 사실상의 영향력 5)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따라 대주주가 되는 자. 다만, 을 행사하고 있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에 따라 금융지주회사의 의결권 는 주주로서 제5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 조제2항 각 호의 대주주가 되는 자는 제외한다.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포 함한다)가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 회적 신용을 갖 추고 있을 것 다. 금융지주회사와[1) 금융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1호에 따라 금융

자회사등이 되는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회사의 재무상태 충족할 것

및 경영관리상태(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자회사등의 경 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 그 자회사등의 경영상태가 건전 가 건전할 것 할 것

- 이 적정할 것
- 라. 주식교환 또는 1) 주식교환비율(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과 완전 주식이전에 따라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교환가격 중 높은 가격을 낮은 가 완전지주회사가 격으로 나눈 비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격[주 되는 경우에는 권상장법인이 가) 또는 나)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주식의 교환비율 경우에는 다)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당사자인 회사 간의 협의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가) 주권상장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_ 제176조의5 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
 - 나)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 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 조의5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 다) 주권상장법인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 환 또는 주식이전의 경우로서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 인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 라)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 간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 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76조의5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산정한 가격
 - 2) 1)의 나) 및 다)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적절성 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176조의5제6항에 따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 아야 한다. 다만, 코스닥상장법인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17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주식교환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 2. 보험지주회사 및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자회사등 편입승인기준 및 세부기준

편입승인기준	세부기준
가. 자회사등으로	1)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의 영위와 금융지주회사 및 편
편입되는 회사의	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 유지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사업계획이 타당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성이 있을 것
하고 건전할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자본 등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절할 것
	3)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
	려가 없을 것
	4) 자회사로 편입되는 외국 법인이 손자회사를 지배하려고
	하거나 외국 자회사가 새로 손자회사를 편입하려는 경우
	그 손자회사가 국내 금융기관이 아닐 것
	5)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할 것
나. 금융지주회사	1) 금융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자기자본이 제28조제
및 자회사등의	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본의 적정성
재무상태와 경영	에 관한 기준을 충족할 것
관리상태가 건전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지주회사
할 것	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평가한 결과 그 금융
1 7 1 - 1 11 1	지주회사등 및 편입대상회사의 경영상태가 건전할 것
	제1호라목에서 정한 세부기준을 충족할 것
라 자회사등으로	
편입하는 경우에	
는 주식의 교환	
비율이 적정할	
것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5] <신설 2010.1.18>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산정방법 (제16조의5제1항·제2항 및 제16조의6제1항 관련)

구분

1. 비은행지주회사 등이 그 비은행 지주회사의 대주 주에게 할 수 있 는 신용공여 합 계액의 한도(제 16조의5제1항 관 련) 산정방법

1. 비은행지주회사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 =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 등이 그 비은행 의 순합계액 ×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 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합계한 금액
- 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다음 1)부터 5)까지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 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 종합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5
- 2)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0
- 3)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4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 4) 상호저축은행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0
- 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 분의 100

2. 비은행지주회사 등이 그 비은행 지주회사의 대주 주가 발행한 주 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제16조의5제2항 관련)

등이 그 비은행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한도 =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 지주회사의 대주 자본의 순합계액 ×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 주가 발행한 주 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의3제7 식(출자지분을 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방법으로 합 포함한다)을 취 계한 금액
- 독할 수 있는 한 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다음 1)부터 5)까도(제16조의5제2 지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항 관련)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 종합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00
 - 2)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8
 - 3)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60 이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 4) 상호저축은행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100
- 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 분의 100
- 3. 비은행지주회사 등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 (제16조의6제1항 관련)

3. 비은행지주회사 신용공여 합계액의 한도 =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 등의 동일차주에 의 순합계액 ×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 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합계한 금액
- 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다음 1)부터 5)까지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 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 종합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5
- 2)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5
- 3)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보험회사 총 자산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 4) 상호저축은행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5
- 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 분의 250
- 4. 비은행지주회사 등의 동일한 개 인이나 법인 각 각에 대한 신용 공여 합계액의 한도(제16조의6 제1항 관련)

등의 동일한 개 인이나 법인 각 의 순합계액 ×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 각에 대한 신용 가. 비은행지주회사등의 자기자본의 순합계액: 제24조제3항 공여 합계액의 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합계 한도(제16조의6 한 금액
 - 나. 자회사등 업종별 한도비율의 가중평균: 다음 1)부터 5)까지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을 종합금융회사,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상호저축은행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 종합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0
 - 2) 금융투자업자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0
 - 3)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보험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보험회사의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 4) 상호저축은행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0
- 5)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자회사등의 자기자본의 합계액 × 100분의 200

비고: 제1호나목3), 제2호나목3), 제3호나목3) 및 제4호나목3)은 보험회사인 자회사등이 2개 이상인 경우로서 보험회사별로 업종별 한도비율이 다를 경우에는 개별 보험회사별로 자기자본에서 업종별 한도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각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제26조제9항 관련)

- 1. 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과 그에 따른 계좌의 개설·해지 및 입금·지급 업무(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계업무·신용부금업무 및 종합금융회사의 어음관리계좌에 관한 업무로서 이와 비슷한 업무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업무는 제외한다.
 - 가. 예금잔액 증명서의 발급 등 해당 입금·지급 업무에 따라 금융이용자에게 부가적으로 제공되는 업무
 - 나. 현금자동지급기(ATM)를 통한 입급·지급, 계좌이체 및 잔액조회 등 에 관한 업무
 -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와 비슷한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 2. 대출·채무보증 또는 어음 할인 등에 대한 심사 및 승인. 다만, 전산시스템에 의한 대출심사 및 신용조사표 작성 등 단순심사 행위는 제외한다.
- 3. 내국환 · 외국환 거래 관련 심사 및 승인
- 4. 보험업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보험의 인수(引受)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 나. 보험계약의 체결. 다만,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모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다. 보험계약의 해지, 실효 및 부활처리. 다만, 해지, 실효 및 부활처리 등을 위한 신청접수, 전산 입력 등 절차적 행위는 제외한다.
 - 라.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심사 및 결정
- 5. 신용카드업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회원자격 심사, 이용한도 부여 및 발급승인. 다만, 기재사항 확인 등 신용위험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 단순업무, 신용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본인 확인·재직 확인·신용도 조회업무는 제외한다.
 - 나. 가맹점 계약의 체결
 - 다. 거래승인
- 6. 시설대여 및 연불판매에 대한 심사 및 승인
- 7. 할부금융 이용자에 대한 심사 및 할부금융 한도설정의 승인
- 8.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및 그 자금의 관리ㆍ운용
- 비고: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단순 반복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업무로서 최종 의사결정권한이 위탁자에게 있는 업무나 위탁자가 사전에 설정한

기준에 따라 사실관계를 단순 확인하는 업무는 본질적 업무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의 범위(제33조의3제1항 관련)

- 1. 법 제4조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의 인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 1의2.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지주회사요건에 해당하게 된 사실에 대한 보고의 접수
- 2. 법 제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승인의 심사
- 3.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자본금 감소 신고의 접수 및 정관변경 신고·보고 의 접수
- 4.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해당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시정권고 또는 보완권고
- 5. 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연장 승인의 심사
- 6. 삭제 <2016. 7. 28.>
- 7.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 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 상황 확인에 필요한 보고의 접수
- 8.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의 심사
- 9.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 주식 한도초과 보유 승인의 심사
- 10. 법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전환계획 승인의 심사
- 11.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기금등이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 12.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 실시
- 13.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 및 그 결과의 공시
- 14.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전환대상자가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15. 삭제 <2014.2.11>
- 16. 삭제 <2014.2.11>
- 17. 삭제 <2014.2.11>
- 18. 법 제8조의5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 19. 법 제8조의5제3항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요구 및 법 제8조의6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변경사실 보고의 접수
- 20.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외국은행등이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 20의2. 법 제10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한도초과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보유사실에 대한 보고의 접수

- 21.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점검
- 22. 법 제10조의2제1항·제6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초과보유요건등 및 법 제8조의2제3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심사
- 23.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
- 24. 법 제10조의2제5항에 따라 한도초과보유주주등이 해당 명령을 이행하는지 에 대한 점검
- 25.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 26.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신고의 접수
- 27.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
- 27의2.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편입신고한 자회사등이 신고대상회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2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승인의 심사
- 29.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비은행지주회사 전환대상자가 행위제한규정 유예기간 연장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 30.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평가 실시
- 31.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 전환계획 이행상황의 점검 및 그 결과의 공시
- 32. 법 제22조제9항에 따라 전환대상자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33. 법 제23조에 따른 보험지주회사의 인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4. 법 제24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35. 법 제29조에 따른 금융투자지주회사의 인가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 36. 법 제30조에 따른 자회사등의 편입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심사
- 37. 법 제34조제6항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분기별 보고 의 접수
- 38. 법 제34조제8항에 따른 자회사등인 보험회사의 해당 비은행지주회사의 대 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보고의 접수
- 39. 법 제34조제10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조치사유에 해당 하는지에 대한 검토
- 40. 법 제34조제11항에 따른 비은행지주회사등 또는 대주주에 대한 같은 조 제 1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위반 여부 점검 및 자료의 제출 요구

- 41. 삭제 <2016. 7. 28.>
- 42. 삭제 <2016. 7. 28.>
- 43. 삭제 <2016. 7. 28.>
- 44. 법 제45조제4항에 단서에 따른 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
- 45.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른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 사실 보고의 접수
- 46. 법 제45조의3제4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의 주요출자자 발행주식 취득사실 보고의 접수
- 47. 법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 자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 48.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은행지주회사등 또는 그 은행지주회사의 주요출 자자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구
- 49. 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라 은행지주회사등이 제24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50.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의 심사
- 51. 법 제47조제2항 단서에 따른 보고의 접수 및 해당 보고내용이 같은 조 제3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
- 52.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른 업무지침서 내용 보고의 접수
- 53. 법 제57조제1항제1호의 조치. 다만, 해당 임원이 그 조치를 받은 사실을 금융관련법령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치는 제외한다.
- 53의2. 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법 제57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의 조치 내용의 결정 및 통보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퇴임한 임원이 그 통보를 받은 사실을 금융관련법령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조치는 제외한다.
- 54. 법 제57조의3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조치, 같은 조 제4항제1호다 목·라목 및 같은 항 제2호라목,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조치
- 55. 법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조치. 다만, 해당 임원이 그 조치를 받은 사실을 금융관련법령에서 임원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조치는 제외한다.
- 56.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해산 또는 합병 인가의 심사
- 57. 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의 접수
- 58. 삭제 <2017. 8. 16.>
- 59. 제3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적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조치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조치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별표 7의2] <신설 2017. 8. 16.>

과징금의 부과기준(제34조제2항 관련)

1. 과징금의 산정기준

가. 기본과징금의 산정

- 1) 기본과징금은 법 제64조 각 호에서 정한 과징금 금액의 상한에 2)에 따른 부과기 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2) 부과기준율은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등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구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나. 기본과징금의 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사항(부과기준율 산정 단계에서 고려된 세부 참작사항은 제외한다),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의 협조 여부, 위반상태의 해소나 위반행위의 예방을 위한 노력,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가목에 따라 산정한 기본과징금 금액을 감경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4조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다. 부과과징금의 결정

- 1)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등 특별한 사정, 금융시장 또는 경제여건,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배상 정도,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를 고려할 때, 나목에 따라조정한 과징금 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액하여 부과과징금으로 정할 수 있다.
- 2) 금융위원회는 위반자의 지급불능·지급정지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반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신의 행위가위법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징금 외에 실효성 있는 다른 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나목에 따라 조정한과징금 금액이 소액인 경우,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

2. 세부기준

부과기준율 등 기본과징금의 산정, 기본과징금의 조정, 부과과징금의 결정, 그 밖에 과징금의 부과 등에 필요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부과대상	금액
가. 법 제5조의2제1항, 제8조제2항 또는	법 제72조제1항	기관	3,000
제8조의6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않	제1호	1) A1	1.500
은 경우		개인	1,500
나. 법 제5조의3을 위반하여 금융지주회	법 제72조제1항	기관	6,000
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제1호의2	개인	3,000
다. 법 제6조의2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법 제72조제1항	기관	6,000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1호		
라. 법 제8조의5제3항(법 제8조제3항에	법 제72조제1항	기관	6,000
따른 승인의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	제3호		
한다), 법 제10조의2제2항, 제34조제		개인	3,000
11항 또는 제45조의5제1항ㆍ제2항에			
따른 자료제공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			
은 경우			
마.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법 제72조제1항	기관	10,000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2호	개인	5,000
바. 금융지주회사등이 법 제34조제5항,	법 제72조제1항	기관	10,000
제45조의2제4항 또는 제45조의3제3	제4호		
항을 위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경우			
사. 금융지주회사등이 법 제34조제6항・	법 제72조제1항	기관	6,000
제7항, 제45조의2제5항ㆍ제6항 또는	제5호		
제45조의3제4항·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대한 보고 또는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			
아. 법 제34조제8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법 제72조제1항	기관	6,000
하지 않은 경우	제5호의2		
자. 법 제48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법 제72조제1항	기관	10,000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위	제6호	개인	2,000
반한 경우			
차. 법 제54조를 위반하여 업무보고서를	법 제72조제1항	기관	6,000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제8호		
카.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않	법 제72조제1항	기관	6,000
거나 허위로 공고한 경우	제9호		
타.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공시를 하지 않	법 제72조제1항	기관	6,000
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	제10호		
파. 장부·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그	법 제72조제1항	기관	10,000
밖의 방법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검사를	제11호	개인	5,000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다만, 임직원
			의 경우에는
			2,000만원으
			로 한다.
하. 금융지주회사가 법 또는 법에 따른 규	법 제72조제1항	기관	2,000
정ㆍ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12호		
거. 금융지주회사등의 임직원으로서 법에	법 제72조제2항	개인	200
따른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제6호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경우			
너. 법 또는 법에 따른 규정 • 명령 또는 지	법 제72조제2항	기관	400
시를 위반한 경우(금융지주회사는 제외	제7호	개인	200
한다)		개인	200